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 3. 27.(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안건 현황

### 1. 심사개요

-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기금
- 다. 제출안건 :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4.(수)
- 나. 제출자: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2026. 3. 6.(금)
- 라. 상정일자: 2026. 3. 27.(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신 승 열
  -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이 명 옥
  - 질의 및 답변
  - 심사결과: 원안가결

## 1. 제안경위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2026년 3월 4일 제출된 것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 주요내용

- 1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신설): 천원행복기금

##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sup>1)</sup>
-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4. 검토 내용

### 1). 기금 조성규모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기금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기존 17개 기금<sup>2)</sup>에 천원행복기금이 신설되어 총 18개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2조 5,146억 원이며, 수입 4,750억 원 대비 지출 4,723억 원으로 27억 원의 순증이 발생함에 따라 2026년도말 조성액은 2조 5,17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기금조성규모】

(단위: 백만 원)

2025년도말 조성액(A)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sup>3)</sup>			2026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2,514,588	475,050	472,311	2,738	2,517,326	

- 2026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1조 1,65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639억 원 대비 20억 원(0.2%)이 증가하였음.

#### 【전체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 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전체기금 대비 비중
18개 기금	1,165,902	1,165,902	100.0
(천원행복기금)	(2,050)	(2,050)	(0.2)

2) 기존 17개 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약취관리기금,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운영계획의 수입 중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와 지출 중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하여 외부에서 실제로 유입되는 실질 재원만을 기준으로 작성

## 2).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수입의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전입금이 1,67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1.2%) 증가하였음.
  - 지출의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비용자성사업비가 1,07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백만 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2,7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0.7%) 증가하였음.

###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

(단위: 백만 원, %)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기정액	제1차 변경액	증감	증감률	항목	기정액	제1차 변경액	증감	증감률
합 계	1,163,852	1,165,902	2,050	0.2	합 계	1,163,852	1,165,902	2,050	0.2
전 입 금	165,825	167,825	2,000	1.2	비 용 자 성 사 업 비	107,117	107,146	29	0.0
보 조 금	119	119	-	-	용 자 성 사 업 비	46,620	46,620	-	-
차 입 금	96,495	96,495	-	-	인 력 운 영 비	-	-	-	-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36,650	36,650	-	-	기 본 경 비	-	-	-	-
예 탁 금 원 금 회 수	280,896	280,896	-	-	예 탁 금	419,150	419,150	-	-
예치금회수	409,957	409,957	-	-	예 치 금	272,420	274,441	2,021	0.7
예 수 금	93,150	93,150	-	-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264,106	264,106	-	-
이 자 수 입	75,300	75,300	-	-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54,419	54,419	-	-
기 타 수 입	5,461	5,511	50	0.9	기 타 지 출	20	20	-	-

\* 자료: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

### 3). 천원행복기금 편성현황

- 「지방자치법」 제159조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천원행복기금은 지난 제305회 인천광역시 제2차 정례회 시 해당 상임위(행안위)에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금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천원행복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은 천원행복정책<sup>5)</sup>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사업의 기획·홍보와 기금 지원 사업의 발굴 및 그 밖에 천원행복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기타수입(기부금 수입\*) 5천만 원이며,
    - \* 경기일보에서 천원행복기금 지정 기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부금”

4)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정의) “천원행복정책”이란 시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천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주요 지출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인 천원행복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천원캠핑 운영 사업비 2,9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자금 20억 2,100만 원은 예치하는 사항으로,
- “천원캠핑 운영” 사업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인천대공원 등 4개소 내의 캠핑장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정 및 한부모가족이 2026년 5월부터 8주간 주말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천원에 이용<sup>6)</sup>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운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임.

### 【천원행복기금 상세내역】

【민생기획관 / 민생담당관】

(단위: 백만 원, %)

기금명	자금운용계획				변경사유 (신규 편성)	비고
	기정액	제1차 변경액	증감액	증감률		
천원행복 기금	-	2,050	2,050	순증	<b>【수 입】</b> ◦ (전입금) 20억 원 편성 - 일반회계 전입금 ◦ (기타수입) 50백만 원 편성 - 경기일보의 천원행복기금 지정 기탁 (기부금)	변 경 계 획 안 p. 16
					<b>【지 출】</b> ◦ (비용자성사업비) 29백만 원 편성 - 천원정책사업 “천원캠핑 운영” 사업 추진 ◦ (예치금) 20억 21백만 원 편성 - 사업 추진 외 여유자금 예치	변 경 계 획 안 p. 17

\* 자료: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 “천원캠핑” 시설현황 및 1,000원으로 예약 후 캠핑(1박)요금 차액 지원 내역

(단위: 천원)

시설명	전체 면수	시설종류	지정 면수	주말요금 (1면/풀셋팅)	금 액 (2개월)	비고
합계					29,000	8주
인천대공원	121면	그늘막캐빈텐트	5	137	6,000	
솔찬공원	62면	카라반	5	199	8,000	
청라해변공원	65면	카라반(풀팩키지)	3	299	8,000	
씨사이드파크	72면	카라반	5	159	7,000	

## 5. 검토 의견

- 금번 변경계획안은 관련 조례 시행에 따라 신규 기금을 반영한 것으로, 절차적·법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시민체감형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점에서 기금 설치의 정책적 필요성 또한 인정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sup>7)</sup>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sup>8)</sup>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수입의 대부분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폐지 후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임.
- 이에 따라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은 향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외 기부금 등 다른 재원의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천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면서, 이 중 900억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나, 현재까지의 실적은 5천만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기부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 연차별 세부 목표 마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기금 설치의 실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확대 전략,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향후 기금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8)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5.8. 행정안전부)

---

### Ⅲ 질의 및 답변

---

- 생략

---

### Ⅳ 토론

---

- 생략

---

### Ⅴ 심사 결과

---

- 심사결과 : 원안가결